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제26BK01656016-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 엔지니어링팀 박세인 직원 (☎ 054-750-4301)
-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FAX 054-750-4079)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규칙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마감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지위를 포기할 경우 향후 3개월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소액수의계약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20
사업명	처분시설 차고신축 공사비상주감리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법	수의계약(소액수의)
사업예산	9,450,7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591,545원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견적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접수개시일자 : 2026. 07. 31. 10:00

나. 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08. 04. 12:00

다. 개찰일시 : 2026. 08. 04. 13:00 이후

라. 견적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전자견적서 제출

※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사 사무소	업종코드 4817
---------	-----------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g.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인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인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 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 체결

- 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이 건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건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건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 및 공단 홈페이지(www.korad.or.kr → 고객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사·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 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사회·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직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해지, 지급조건 위반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1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750-402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KORAD 캠페인 윤리하자!

KORAD Pay!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선도기관

비용은 나누기 , 마음은 더하기

• 2016 KORAD Pay 표어 공모 당선작 •

KORAD 동반성장 안내



01 기업성장 응답센터

목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 관련 기업들의 문의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제도

*계약체결·문의, 선금지급 등 계약과정 중 동반성장 관련 문의 가능

관련사이트 <https://korad.or.kr> → 환경·사회·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기업성장응답센터



02 기술이전 제도

기술이전 제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보유중인 지식재산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학 등에게 양도, 실시 허락 등의 방법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전 기관들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창출에 기여하여 방폐물관리 산업의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

관련사이트

tech.korad.or.kr



03 성과공유제 운영

사업개요

수·위탁기업 간 사전 약속된 공동혁신활동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고, 이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제도

관련사이트

win-win.or.kr



04 협력이익공유제 운영

사업개요

기업 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관련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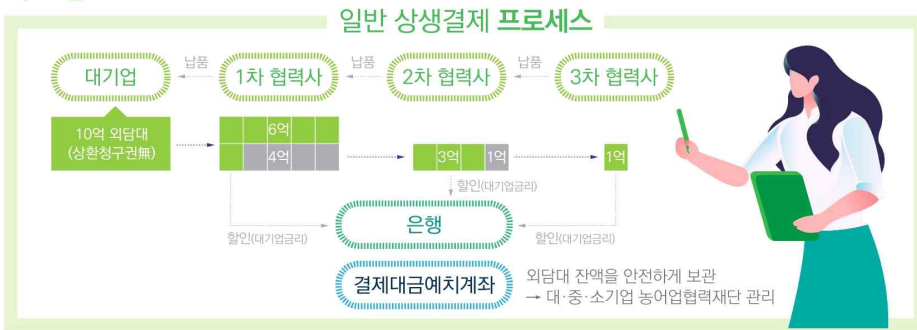
www.winplus.or.kr



05 상생결제제도 운영

사업개요 현금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

제도흐름도



관련사이트 win-win.or.kr

06 기술자료 임치계약 지원 *공단이 임치 수수료 제공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 비밀을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로 기술유출 및 분쟁 시 증거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관련사이트 win-win.or.kr / www.kescrow.or.kr



07 상생누리 프로그램 운영



08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 추진

사업개요 공정거래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최신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변동·상승분 반영을 위한 제도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변경기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 공사·용역·물품제조 : 5% 이상 물품구매 : 10% 이상
	계약체결 후 90일 초과	> 계약금액의 3% 이상

